

# 감정평가서

건명: 양수영 외 4명  
소유물건(2025타경30829)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장영규

감정평가서번호: 202509-가-00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양감정평가사사무소

#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이종현

(인)

감정평가액	팔천사백사십만원정 (₩84,400,00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장영규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양수영 외 4명 (2025타경30829)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9.10	2025.09.09 ~ 2025.09.10	2025.09.10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1,700	토지	1,700	-	79,900,000
	제시외구축 물	관정 1식  이	제시외구축 물	관정 1식  하	-  여 백	4,500,000
합계					₩84,4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514-2	답	농림지역	1,700	1,700	47,000	79,900,000	
	<제시외구축물>								
a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514-2 위지상	관정		1식	1식	-	4,500,000	
<b>합 계</b>								<b>₩84,400,000.-</b>	
				이	하	여	백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 1. 감정평가 개요

### 가.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 나. 감정평가의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 다.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가치로 결정하였음.

####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해당사항 없음.

### 라.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9월 10일로 하였음.

### 마.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본건 감정평가를 위한 실지조사일은 2025년 09월 09일~10일이며,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 바. 감정평가방법

### 1. 감정평가방식 및 평가방법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결정은 아래의 감정평가방식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 검토를 거쳐 결정함이 원칙임.

#### (1) 감정평가방식

---

- ①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②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 ③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 (2) 감정평가방법

---

- ①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 ②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 ③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거래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 ④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였음.
- (2) 본건 토지의 평가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다른 평가 방법(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 사. 기타 참고사항

1. 기호(1) 토지상에 소유자미상의 비닐하우스 2동이 소재하고 한동은 동소 514-3번지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동이 가능한 구조물임을 감안하여 평가에서는 제외하였음.
2. 기호(1) 토지상에 제시외건축물(a)(관정)가 소재함.(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에 신고된 관정은 없음)
3. 기호(1) 토지에 걸쳐 이동식화장실 1동과 계사 1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4. 본건 평가시 인용 또는 참고한 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지번 등 일부분에 \*\* 처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가. 토지가액 산출

#### 1. 대상토지의 개요

기호	소재지 (진주시)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2025년, 원/㎡)
1	수곡면 창촌리 514-2	답	1,700	농림지역	답	세로(불)	세장형 평지	17,200

#### 2. 공시지가기준법

##### (1) 비교표준지 선정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하였음.

(2025.01.01. 기준)

기호	소재지 (진주시)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 고
A	수곡면 창촌리 510-3	답	3,703	농림지역	답	세로(불)	세장형 평지	17,200	

##### (2) 시점수정(2025.01.01 ~ 2025.09.10)

시점수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계산식
진주시 농림지역	0.515% (1.00515)	2025.01.01 ~ 2025.07.31 : 0.425 2025.07.01 ~ 2025.07.31 : 0.068  ( 1 + 0.00425 ) * ( 1 + 0.00068 * 41/31 )

### (3)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과 대상토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되, 비교표준지가 있는 지역과 대상토지가 있는 지역 모두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함.

-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 (4)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의 최유효이용과 대상토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되,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은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고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은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함.

#### ① 개별요인 비교항목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농경지대 -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농로의 상태	농로의 폭, 포장 등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출하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토양, 토질의 양부
		일조, 통풍 등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등	고저(경사지 등)
		경사의 방향
	경작의 장애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토양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② 개별요인 비교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본건	표준지 공시지가							
1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제반 개별요인 대등함.

## (5) 그 밖의 요인 보정

### ①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표준지공시지가는 과세 및 평가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며, 현실지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와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②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법원판례 2007.7.12선고 2006두11507, 2004.5.14선고 2003다 38207, 2003.7.25선고 2002두 5054,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999.6.21 토관 58342-471, 1999.5.20 기획 0100-725 등에서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③ 인근 평가사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진주시)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평가목적
							기준시점
1	수곡면 창촌리 74*-**	전	1,616	농림지역	전	43,500 (평균)	공매
							2023.07.31
2	수곡면 원계리 51*-*	답	2,268	농림지역	답	42,000	농지매입
							2024.02.13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④ 보정치 산정

### \* 산정방식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 평가) 사례가격}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 비교사례의 선정

인근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중 용도지역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평가가격 및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비교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평가사례(1)**을 선정하였음.

### \* 비교표준지(A)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구분	소재지 (진주시)	기준 단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시산가격 (원/㎡)	격차율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사례1 기준 표준지 가격	수곡면 창촌리 74*~**	43,500	1.01129	1.000	1.058	46,543	2.692	2.69
표준지A 보정가격	수곡면 창촌리 510-3	17,200	1.00515	--	--	17,289		

시점수정	진주시 농림지역(2023.07.31 ~ 2025.09.10)							1.01129
지역요인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1.000
개별요인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	기타	누계	
	0.92	1.00	1.00	1.15	1.00	1.00	1.058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접근도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 열세이나, 형상 등 획지조건 우세함.								

## ⑤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인근 유사 토지	인근지역 내 유사토지의 호가수준은 45,000원/㎡~60,000원/㎡ (토지만의 가격) 내외 수준임.
----------	---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⑥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상기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및 평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구분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비고
A	2.69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결정

기호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17,200	1.00515	1.000	1.00	2.69	46,506	<b>47,000</b>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3. 거래사례비교법

### (1) 거래사례 선정

본건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고 물적 유사성과 위치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거래사례(A)를 선정하였음.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A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6*-*	전	2,127	농림지역	45,133	2025.04.18	
B	진주시 수곡면 원계리 64*	답	1,762	농림지역	48,240	2024.04.02	
C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22*-*	전	1,126	농림지역	55,950	2024.03.25	

###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선정된 사례는 인근 지가수준 등을 검토할 때 특별한 사정은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000)

### (3) 시점수정(2025.04.18 ~ 2025.09.10)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계산식
진주시 농림지역	0.410	$2025.04.01 \sim 2025.04.30 : 0.088 \quad 2025.05.01 \sim 2025.05.31 : 0.115$ $2025.06.01 \sim 2025.06.30 : 0.098 \quad 2025.07.01 \sim 2025.07.31 : 0.068$ $(1 + 0.00088 * 13/30) * (1 + 0.00115) * (1 + 0.00098) * (1 + 0.00068) * (1 + 0.00068 * 41/31) \approx 1.00410$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4)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거래사례 인근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 (5) 개별요인 비교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본건	거래사례							
1	A	0.90	1.00	1.00	1.25	1.00	1.00	1.125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접근도로의 상태 등 가로조건 열세이나, 형상 등 획지조건 우세함.

##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결정

기호	거래사례 토지단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45,133	1.000	1.00410	1.000	1.125	50,983	51,000

## 4. 토지가액 결정

### (1) 산정된 시산가액

기호	공시지가기준가액 (원/㎡)	비준가액 (원/㎡)	비교
1	47,000	51,000	

### (2) 검토 및 토지가액 결정

산정된 시산가액은 위와 같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공시지가기준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에 의거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공시지가기준가액으로 토지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기호	소재지 (진주시)	지번	면적 (㎡)	사정 (㎡)	적용단가 (원/㎡)	평가금액	비고
1	수곡면 창촌리	514-2	1,700	1,700	47,000	79,900,000	
합계				1,700		79,900,000	

### III. 감정평가액 결정

#### 가. 감정평가액

구분	사정면적(㎡)	적용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1,700	47,000	79,900,000	
제시외구축물	관정 1식	-	4,500,000	
합계			84,400,000	

#### 나. 결정의견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을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소재 조계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대와 농촌취락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교통상황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3)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평지로, 현황 답(비닐하우스)으로 이용중임.

## (4) 인접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농로와 접함.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1) 본건 지상에 제시외구축물(a)(관정1식)이 소재함.
- 2) 본건 지상에 비닐하우스 2동과 이동식화장실 1동 및 계사 1식이 소재하며, 이동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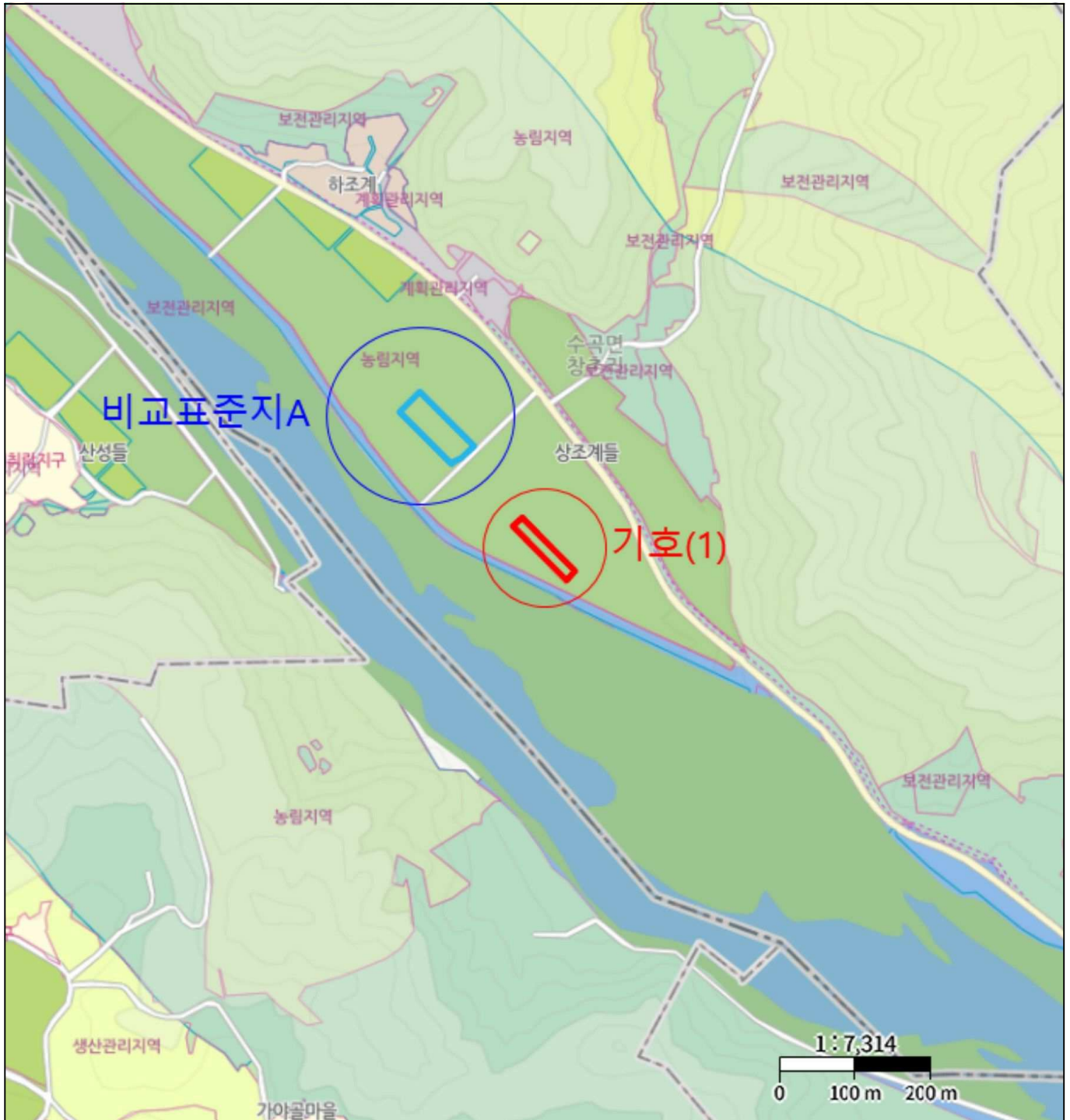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임대관계 : 미상임.
- 2)기 타 : 없음.

# 광역 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514-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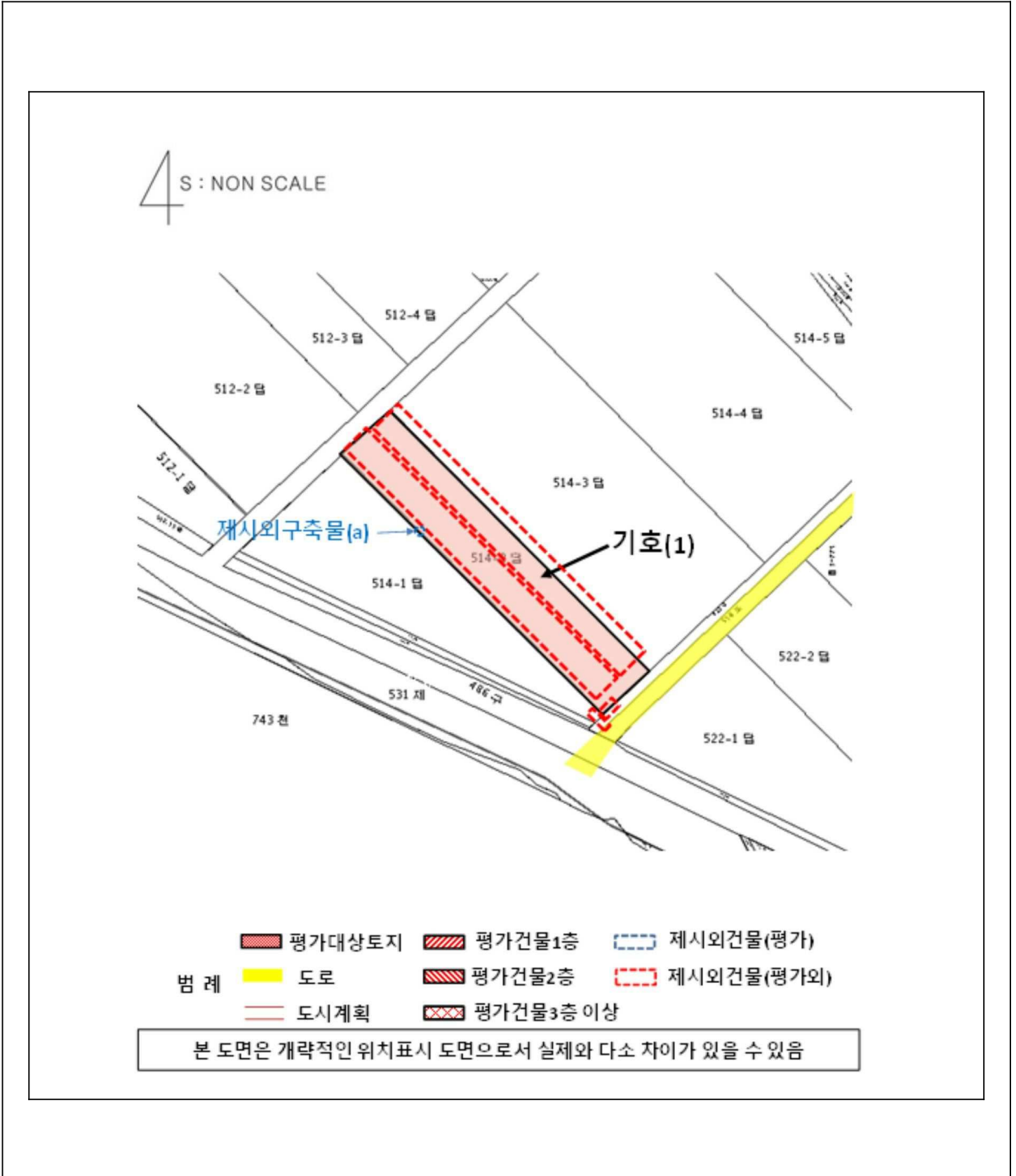
# 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514-2
-----	------------------------



# 지 적 도



# 사 진 용 지



평가건 전경



평가건 전경

# 사 진 용 지



제시외구축물(a)



제시외구축물(a)

# 사 진 용 지



비닐하우스(평가제외)



이동식화장실, 계사(평가제외)